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6
----------	----

2018. 10. 15. (월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서동학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8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: 2018년 10월 15일

(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서동학 부위원장)

가. 제안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응시자에 대한 전형료의 징수 규정은 있으나,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입학선발수수료를 해당학교(유치원)의 장이 정함(안 제2조제1항)
-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2조에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액을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 및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교장과 유치원장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안 제3조에 입학선발수수료의 면제·감액·반환 등 입학선발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

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징수금액) 입학선발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는 그 학교(유치원)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(유치원)의 장이 정한다. 다만,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.

제3조(징수방법)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.

② 학교(유치원)의 장은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
1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3.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수수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2. 학교 또는 유치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학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 전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72조의2(전형료)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88조(전형료)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□ 유아교육법

제24조(무상교육)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(無償)으로 실시하되,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유아교육법 시행령

제29조(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(이하 "공통과정"이라 한다)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유치원
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3.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

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.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